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84회 제2차 정례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1. 12.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12.

운영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태형 의원 외 7명
- 발의일자: 2021. 11. 25.
- 회부일자: 2021. 12. 3.
- 검토기간: 2021. 12. 3. ~ 12. 9.(7일간)

2. 개정이유

-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부개정 됨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고,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 의안 발의 정족수를 규정하여 의회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하여 집행부에 대한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개정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및 제5조)
- 나. 정례회기를 기존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확대 운영하고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정례회 운영사항, 임시회 소집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 및 용어 정비(안 제3조 및 제4조)

- 다. 행정사무감사의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로 변경(안 제5조)
- 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한 의원 발의 정족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신설)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제56조, 제76조,

나. 비용추계: 비대상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법률 제17893호, 2021.1.12. 전부개정)」이 전부개정 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 상위 법령에서 “정례회 집회일 및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임시회 소집 요구 의원 수”, “연간 회의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의결할 의안발의 정족의원 수” 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여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대부분 위임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맞게 정비하였음.
- 정례회 회기를 40일 이내에서 50일 이내로 탄력적으로 운영 코자 하였고, 기존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정례회에 실시하였으나 개정조례안에서는 제2차정례회에 하는 것으로 제출 되었습니다. 우리구와 중구, 남구에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와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성군에서는 제2차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제2차정례회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 제2차정례회 안건이 과중되는 단점은 있으나 행정사무감사 후 다음연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사업에 대한 올바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등 장·단점이 있으니 운영위원회에서 토론하여 의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 관 련 법령 】

□ 지방자치법

제53조(정례회) ① 지방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정례회의 집회일, 그 밖에 정례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4조(임시회) ①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로 집회되는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일부터 2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쳐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경우에 최초의 임시회는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에 소집한다.

③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 회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장과 부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을 때에는 지방의회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개회·휴회·폐회와 회의일수) ① 지방의회의 개회·휴회·폐회와 회기는 지방의회가 의결로 정한다.

②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76조(의안의 발의) ①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지방의회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② 위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발의 의원과 찬성 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 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또는 전부개정조례안 중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하거나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